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79호
- 나. 발 의 자 : 송경택 의원(찬성자 26명)
- 다. 제출일자 : 2025년 2월 3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 2. 제안이유

-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사의 사회적 범주를 확대하여, 현행 조문에 규정된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체육인도 포함함으로써 명예시장의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 조례에 규정된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명예시장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3. 주요내용

- 가.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사의 사회적 범주에 청년, 여성, 체육인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
- 나.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4항).
- 다.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5항).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된 명예시장의 전문 분야 범주를 확대하여 명예시장의 사회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명예시장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명예시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2) 명예시장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20명의 인사가 제7기('24.12.3.~'25.12.2.)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임.

### < 제7기 서울시 명예시장 >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및 경력
1	문화예술	고두심	- 배우 - 전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홍보대사단 단장
2	청년보훈	김세진	- 태재연구재단 선임연구원 - 저서 <나를 외차다>, <한국군의 뿌리> 등
3	인구·저출생	김현철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 전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부교수
4	건강·의료	남궁인	-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 -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5	도시안보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전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6	사회통합	염재호	- 태재대학교 총장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제19대 총장
7	글로벌 관광	오시난	- 서울시관광협회 이사 및 대의원 - (주)케르반그룹 대표이사
8	건강·의료	오은영	- 오은영아카데미 대표 - 저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등
9	도시·건축	유현준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주)스페이스컨설팅그룹 대표
10	미래세대	이동수	- 청년정치크루(청년정책 싱크탱크) 대표 - 저서 <캐스팅 보트>, <YS 세계를 보다> 등
11	지방상생	이만기	- 인제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 교수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2	뉴미디어	이진우	- MBC FM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 - 경제유튜브 삼프로TV(구독자 252만) 부대표
13	산업기술	장동선	- 궁금한뇌연구소 대표 - 전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조교수
14	이민·이주노동	정희옥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서 <한 번은 불러보았다. 짱개부터 동남아까지> 등
15	고령사회	정희원	- 서울아산병원 임상조교수 - 저서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 등
16	체육	최민호	- 올림픽 유도 남자 금메달리스트(2008) - 전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교수
17	미래혁신산업	최재봉	- 성균관대 부총장, 기계공학부 교수 -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18	안전환경 (안전,교통,환경)	한문철	- 변호사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 진행자
19	여성	한젬마	- 러쉬 코리아 부사장 - 호서대학교 문화기획학과 조교수
20	약자동행	홍윤희	-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 모두의 1층,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제작 등

(3) 명예시장 분야 확대(안 제5조제1항)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시장은 <u>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u> 등 각 분야별로 명예시장을 위촉하며,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 <u>청년, 여성,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체육인</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제5조제1항은 명예시장의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고자 활동 분야 예시에 청년, 여성, 체육인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은 명예시장이 될 수 있는 인사로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나열에 불과하고 명예시장의 활동 분야는 위촉 당시 현안에 따라 유동적임.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현행) >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시장은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명예시장을 위촉하며,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실제로, 현재 운영중인 제7기 서울시 명예시장단에는 장애인, 전통상인 분야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저출생, 도시안보, 글로벌관광과 같이 예시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음.

- 또한, 제7기 서울시 명예시장단에는 이미 동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청년, 여성, 체육인 분야의 명예시장도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에 따라 청년, 여성, 체육인을 별도의 예시로 명시하는 것은 입법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입법 경제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 명시된 명예시장의 활동 분야 범위가 이해의 용이성과 표현의 간결성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 (4)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안 제8조제4항)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제8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제4항은 명예시장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현재 서울시는 명예시장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sup>1)</sup>이라고 판단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음.
- 명예시장 회의의 주요 내용은 ▶정책 및 사업의 소개, ▶명예시장의 정책 제안, ▶정책 제안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 결과 보고, ▶명예시장 활동 사항 공유 등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해당된다고 보임.
- 다만, 회의록의 내용이 내부 검토 사항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것임.
- 따라서 명예시장 회의의 회의록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sup>2)</sup>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적극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 명예시장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자문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sup>3)</sup>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후략)

2)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⑤ 시장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명예시장 운영의 목적<sup>4)</sup>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라는 점과, 명예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예시장 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는 강하게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도 없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홍민지(2180-8118)
------	----------------	-------	----------------

4)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안번호  
2379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송경택		2025. 2. 3.
주요내용	<p><b>&lt;개정 필요성&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시장 위촉 인사의 사회적 범주를 다양화</li> <li>○ 명예시장 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li> <li>○ 명예시장의 의견 및 정책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규정화</li> </ul> <p><b>&lt;주요 입법 요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시장 위촉 인사의 사회적 범주에 “청년, 여성, 체육인”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li> <li>○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4항).</li> <li>○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5항)</li> </ul>			
추진경과	○ 2025.2.3.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송경택 의원 대표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특이사항 없음			
대응방안	○ 조례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함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팀장	현장홍보팀장 권석진(☎2133-6415)	담당 행정6급 박지혜 (☎2133-6457)